

골판지용 옥수수 전분 양허관세



골판지용 옥수수 전분 양허관세 | www.kcca.or.kr

-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 ▶ 2007년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 공고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공고 제2007-1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6-76호(2006.12.31))에 의거 우리조합의 양허관세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2007. 1. 2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 1 부 양허관세추천

제 1조(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양허관세 대상품목(이하 '원자재' 라 한다)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이하 '양허관세추천' 이라 한다) 및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하 '골판지조합' 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자재를 양허관세추천 받은 실수오자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조(대상품목)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	H·S	품명	비고
옥수수전분	1108.12.9000	옥수수전분(기타)	골판지 제조용

제 3조(추천 및 사후관리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는 다음 1호와 같다.

1. 옥수수전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1211)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골판지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자

제 4조(추천물량)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품목별 양허관세 추천물량 범위내로 한다.

제 5조(양허관세추천 신청서류)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및 농림부 고시 제2006-76호(2006.12.31) 제7조에서 "기타 추천대행 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실수오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함)
2. 원료사용 및 제품생산 계획서 1부.
3. 물품매도 계약서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1부.(대행계약자에 한함)



제 6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골판지조합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제 7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 부 사후관리

제 8조(사후관리사항) 골판지조합은 양허관세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사후관리한다.

1. 양허관세추천 품목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양허관세추천 물량에 대한 사용량·재고량 등의 보고일치 여부에 관한 사항.
3. 수불관리대장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9조(사후관리방법) 제8조에 의한 양허관세추천 품목의 사후관리는 서면보고를 기본으로 하되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당조합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보고) 골판지조합은 제9조에 의하여 현장 확인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기록정리) 양허관세추천을 받은자는 원자재의 수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발생시마다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신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실수요자는 그 사실을 제지연합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익월 5일까지 골판지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허관세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
2. 원료사용실적, 원료재고량 및 제품생산량 등

제14조(제재 및 보고)

- ①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제9조 내지 제14조에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에 대해 별표 1의 제재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 ② 골판지조합 이사장은 전항에 의한 조치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본 요령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 고시 및 지시에 따르며, 농림부 고시 및 지시에 의거 본 요령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HP)	
팩스번호		
·신청내용		
H·S	품명	수량
	금액	수입선
		수입예정일자
		용도

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농림부고시 제2006-76호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신청인 (인)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구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HP)	(HP)
팩스번호		
·추천내용		
H·S	품명	수량
	금액	수입선
		수입예정일자
		용도

○유효기간 만료일: 2007.

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농림부고시 제2006-76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07.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귀하

이사장 류종우 (인)

별지 제2-1호 서식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_____

1. 신청인(납세의무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성명: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2. 수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성명: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무역입등록번호: _____

3. 추천내역

① 사면부(045): _____

② 품명 및 규격: _____

③ 추천 수량: _____ 4군 액: _____

④ 원산지(공급지) 4항 도: _____

⑤ 사면부(045): _____

⑥ 품명 및 규격: _____

⑦ 추천 수량: _____ 4군 액: _____

⑧ 원산지(공급지) 4항 도: _____

⑨ 사면부(045): _____

⑩ 품명 및 규격: _____

⑪ 추천 수량: _____ 4군 액: _____

⑫ 원산지(공급지) 4항 도: _____

※추진조건: _____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12조제, 13조 및 농림부고시 제2006-76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07년 월 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류종우 (인)

별표 1

위반 내용	관련 조항	위반 회수 별 제재기준		
		1 회	2 회	3회 이상
1.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한 원자재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의 사용한 경우	제7조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3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취소
2. 사후관리 보고서를 3개월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제12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3.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10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4. 현장점검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경우	제8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5. 양허관세 추천대상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서면경고	6개월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1년간 원자재 양허관세 추천 정지



팩스 : 02 - 3474 - 8895

3. 기타 행정사항 등

가. 추천받은 물량은 반드시 추천서 유효기한 내에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 익월 5일까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추천받은 자는 추천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법규 및

농림부고시에 따라 조치됩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부고시 [2006-76호('06.12.31)]와 우리조합 세부요령에 따르며, 양허관세 추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조합 기획관리팀(전화 02-3474-7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 2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류종우

별표 4

각서

귀 조합에 옥수수 전분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전분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외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불법유통, 용도외 전용,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귀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수입 추천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회사명 :

소재지 :

대표 : (인)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2007년도 연간원료(옥수수전분) 및 제품(골판지) 수급계획

[별표 3]

원료 (옥수수 전분, kg)	구입	이월				재고				이월	생산 (골판지, m ²)	판매	재고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제품 m²당 생산시 원료(옥수수전분) 소요량
 SW인 경우 g(A/F), g(B/F), g(E/F),
 DW인 경우 g(AB/F), g(BB/F), g(EB/F)
 만면인 경우 g(생산 공률 표기)
 *표시단위는 소수점 3자리까지 나타내며, 각 사별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나타냄.

최근 일별 원료(옥수수전분) · 제품(골판지) 수급실적 및 계획

[별표 3]

구분	년월	이월			구입			합계			사용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수입	국산	소계	
원료 (옥수수 전분, kg)														
제품 (골판지, m ²)														

*제품 m²당 생산시 원료(옥수수전분) 소요량
 SW인 경우 g(A/F), g(B/F), g(E/F),
 DW인 경우 g(AB/F), g(BB/F), g(EB/F)
 만면인 경우 g(생산 공률 표기)
 *표시단위는 소수점 3자리까지 나타내며, 각 사별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나타냄.